

# 영 업 보 고 서

(제11기)

사업연도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국교통자산운용            
대표이사 :           성 훈 진          (직인생략)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44 극동빌딩 8층  
(대표전화)          02-6328-8800  
(홈페이지)          www.kotam.com.sg  
작성책임자 : (직책) 주임          (성명) 이 효 주  
(전화번호)          02-6328-8802

## < 목 차 >

### I.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개요
  - 가. 회사의 일반현황
  - 나. 회사의 업무단위
  - 다.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2. 회사의 연혁
  -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
3. 자본금 변동
  - 가. 자본금 변동현황
4. 주식의 총수 등
  - 가. 주식의 총수
5. 배당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

1. 영업 종류별 현황
  - 가. 투자매매 업무
  - 나. 투자중개 업무
  - 다. 집합투자 업무
  - 라. 투자자문 업무
  - 마. 투자일임 업무
  - 바. 신탁 업무
2.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가. 영업용순자본비율
  - 나. 순자본비율 I (개별)
  - 다. 순자본비율 I (연결)
  - 라. 레버리지 비율
  - 마. 최소영업자본액

### III.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각주사항

#### I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 현황
  - 나.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3. 계열회사 등의 현황
  - 가. 계열회사의 현황
  - 나. 타법인 출자현황

#### V.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
2. 최대주주 변동현황

#### V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조직기구 현황
2. 인력 현황
  - 가. 일반현황
  - 나. 임원의 현황

#### VII.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내역
  - 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 다.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라. 영업 양수도 내역
  - 마. 자산 양수도 내역
  - 바.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2.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
  - 가. 계열사 증권 인수·주선 현황(총괄표)
  - 나. 계열사 증권 인수 현황(상세표)
  - 다. 계열사 증권 주선 현황(상세표)
  - 다-2. 계열사 증권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현황(상세표)
  - 라.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총괄표)
  - 마.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계열사별 분기말 보유 내역)
  - 바.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보유형태별 비중)
  - 사.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실보유자별 비중)
  - 아. 계열사 증권의 취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결과와 리스크 관리
  - 자. 계열사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VIII. 고객예탁재산의 현황 및 그 보호에 관한 사항

1. 고객 예탁재산 및 보호
  - 가. 투자자예탁금 예치현황
  - 나. 투자자예탁증권 예탁현황
  - 다. 보험료 납부현황

## IX.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등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정책
  - 가. 내부통제체제 구축현황
2. 위험관리정책
  - 가. 위험관리조직 및 정책
3.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 X.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2. 제재현황

# I. 회사의 현황

## 1. 회사의 개요

### 가. 회사의 일반현황

구분		내용
상호		(주)한국교통자산운용
대표자		성훈진
본점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44 극동빌딩 8층
설립일		2014년 03월 19일
결산월		12월
자본금		8,000,000,000원
주당 액면가(원단위)		5,000원
발행주식수	보통주	1,600,000
	우선주	해당사항 없음
홈페이지주소		<a href="http://www.kotam.com.sg">http://www.kotam.com.sg</a>
대표전화번호		02-6328-8800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영위업무의 근거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
계열회사의 총수		해당사항 없음
주요 계열회사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용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상장여부 : 회사명에 상장여부를 기재한다.(예, 00회사(상장), 00회사(비상장))
2.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기재한다.
3.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신용평가결과 : 신용평가 회사명, 신용평가 등급 및 신용평가 일자리를 기재한다.

### 나. 회사의 업무단위

인가(등록) 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인가(등록)일	최저자기자본
3-13-1 (3-14-1)	집합투자업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법 제249조의 2에 따른 적격투자자	20151216	1,000,000,000원

####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3>에 따라 기재한다.
2. 등록 :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 등 등록대상 금융투자업자에 한하여 기재한다.
3. 인가(등록)일 : 자본시장법 재인가(등록)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최초 인가(등록)일을 기재한다.
4. 최저자기자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최저자기자본 금액 기재

## 다. 경영업무 및 부수업무

구분	내용	보고일	GA301, GA302 보고 대상 여부
부수업무	선박투자운용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마케팅, 투자관리, 법무업무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2021.03.31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구분 : '경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기재
2. 내용 :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영(부수)업무의 내용을 기재
3. 보고일 :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보고일자" 기준
4. GA301, GA302보고 대상 여부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방법으로 투자기구 운용 및 관련 금융상품 판매시 해당 업무 보고서 코드 선택,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 2. 회사의 연혁

###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3월 19일 설립</li> <li>• 2015년 10월 22일 18.8억원 (376,000주) 증자</li> <li>• 2015년 11월 04일 2.0억원 (40,000주) 증자</li> <li>• 2015년 12월 16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업무단위: 3-14-1)등록</li> <li>• 2015년 12월 17일 상호변경</li> <li>• 2016년 6월 9일 18.0억원 (360,000주) 증자</li> <li>• 2016년 12월 2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li> <li>• 2018년 10월 30일 40.0억원 (800,000주) 증자</li> <li>• 2020년 4월 14일 본점이전</li> <li>• 2021년 5월 31일 대표이사변경(홍준경-&gt;성훈진)</li> </ul>	국제마리타임파트너스(주)-(주)한국교통자산운용

### 기재상의 주의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립일,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임원의 변동)
3.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4.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5. 기타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6. 상호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및 변경사유
7. 합병, 영업양수도 등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상대방, 내용, 합병등 계약일, 등의 내용을 기재

### 3. 자본금 변동

#### 가.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 : 주, 원)

주식발행(감소) 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비고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감소) 가액	
2014-03-19	주식발행	보통주	24,000	5,000	5,000	자본금 120,000,000원
2015-10-22	주식발행	보통주	376,000	5,000	5,000	자본금 1,880,000,000원 증가
2015-11-04	주식발행	보통주	40,000	5,000	5,000	자본금 200,000,000원 증가
2016-06-09	주식발행	보통주	360,000	5,000	5,000	자본금 1,800,000,000원 증가
2018-10-30	주식발행	보통주	800,000	5,000	5,000	자본금 4,000,000,000원 증가

#### 기재상의 주의

1. 설립이후 자본금 변동내용을 기재한다.
2. 외국 금융투자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 증감현황을 기재하되, 비교란에 증감금액을 기재한다.

### 4. 주식의 총수 등

#### 가. 주식의 총수

(단위 : 주, 원)

구분	발행가능 총주식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수	비고
보통주	10,000,000	1,600,000	0	1,600,000	1,600,000	
우선주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종류별로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유통주식수를 기재
2. 유통주식수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감소한 주식의 총수 및 자기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

## 5.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원, %)

구분		당기	전기
주당 액면가액		해당사항 없음	
당기순이익(A)			
주당순이익			
현금배당금총액(B)			
주식배당금총액			
현금배당성향(=B/A×100)			
주당 현금배당금	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	보통주		
	우선주		
주석란			

### 기재상의 주의

1. 주당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2. 현금배당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금배당금 및 해당사업연도중에 이루어진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주석란에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 지급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주식배당금 총액은 주식배당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하여 기재한다.
3. 주당 현금배당금은 주당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하며, 주당 주식배당은 주당 배당으로 지급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4. 주당 현금배당금 및 주당 주식배당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배당에 차등이 있는 경우 및 현금이나 주식 외에 현물로 배당을 지급한 경우 그 내용을 주석란에 기재한다.
5. 업무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배당내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배당예정사항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내역 확정시 수정 보고



## II. 사업의 내용

### 1. 영업 종류별 현황

#### 가. 투자매매 업무

##### (1) 증권 거래현황

(단위 : 원)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잔액	평가손익
지분 증권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신주인수 권증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기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계						
채무 증권	국채· 지방채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기타				
		소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				
		토지개발채권				
		기타				
		소계				
	금융채	산금채				
		중기채				
		은행채				
		여전채				
		종금채				
		기타				
		소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기타					
	계					
집합투자증권	ETF					
	기타					
	계					
투자계약증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잔액	평가손익
외화 증권	지분증권					
	채무 증권	국채·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기업어음				
		기타				
		소계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기타					
	계					
	파생결합증권	ELS				
	ELW					
	기 타					
	계					
기타증권						
합계						

기재상의 유의

1.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계정(종금계정 포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증권에 대해 기재(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매수, 매도, 합계 : 사업연도 누적기준으로 실제 거래대금을 기재(매도에는 취득 후 중도매각, 만기상환을 포함)한다.
3. 잔액 : 자기계정(종금계정 포함)으로 운용중인 증권의 대차대조표 금액을 기재한다.  
(매도유가증권의 경우 잔액에 (-)금액으로 합산 기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 제외)
4. 국채·지방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주체인 채권 (예. 국고채, 양곡증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수도공채, 도시철도채 등)
5. 특수채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예. 통안채, 예보채, 도로공사채 등)
6. 금융채 : 특수채와 금융채가 중복될 경우 금융채로 기재한다.
7. 외화증권 : 외화증권과 타 증권이 중복될 경우 외화증권으로 기재한다.
8. 평가손익 : 손익계산서 상 평가손익을 기재(처분손익은 제외)한다.
9. 매도증권은 차입하여 매도 시 매도금액에 포함하고, 매수하여 상환시 매수금액에 포함한다.

(2)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계약, 원)

구분			거래금액				잔액		평가 손익						
			투기	헤지	기타	계	자산	부채							
선물	국내	상품 선물	금												
			돈육												
			기타												
			소계												
		금융 선물	금리 선물	국채3년											
				국채5년											
				국채10년											
				기타											
				소계											
			통화 선물	미국달러											
				엔											
				유로											
				기타											
				소계											
	지수 선물	KOSPI200													
		KOSTAR													
		기타													
		소계													
	개별주식														
	기타														
	계														
	기타														
	국내계														
	해외	상품 선물	농산물												
			비철금속·귀금속												
			에너지												
			기타												
소계															
금융 선물		통화													
		금리													
		주가지수													
		개별주식													
		기타													
		소계													
		기타													
해외계															
선물계															
옵션	국내							지수 옵션	KOSI200						
									기타						
									소계						
	개별주식														
	통화													미국달러	
														기타	
소계															
기타															
국내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분		거래금액				잔액		평가 손익
		투기	헤지	기타	계	자산	부채	
해외	주가지수							
	개별주식							
	금리							
	통화							
	기타							
	해외계							
옵션계								
기타	국내							
	해외							
	기타계							
합계								

기재상의 유의

1. 작성대상 :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계정(종금계정 포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기재한다.
2. 거래금액, 평가손익은 사업연도 누적기준으로 기재한다.
3. 장내파생상품 :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4. 평가손익 : 손익계산서상 평가손익을 기재(처분손익은 제외)한다.
5. 잔액 :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계약, 원)

구분		거래금액				잔액		평가 손익
		투기	헤지	기타	계	자산	부채	
선도	신용	해당사항 없음						
	주식							
	일반상품							
	금리							
	통화							
	기타							
	계							
옵션	신용							
	주식							
	일반상품							
	금리							
	통화							
	기타							
	계							
스왑	신용	해당사항 없음						
	주식							
	일반상품							
	금리							
	통화							
	기타							
	계							
기타								
합계								

기재상의 유의

1. 작성대상 :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계정(종금계정 포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기재한다.
2. 거래금액, 평가손익은 사업연도 누적기준으로 기재한다.
3. 잔액 :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4. 평가손익 : 손익계산서상 평가손익을 기재(처분손익은 제외)한다.
5. 장외파생상품 :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중개 업무

###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원)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수수료
지분증권	주식	유가증권시장			해당사항 없음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신주인수권 증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기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지분증권 합계					
채무증권	채권	장내			
		장외			
		소계			
	기업어음	장내			
		장외			
		소계			
	기타	장내			
		장외			
		소계			
채무증권계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ELS				
	ELW				
	기 타				
	파생결합증권합계				
외화증권					
기타증권					
증권합계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수수료	
선물	국내					
	해외					
	소계					
옵션	장내					국내
						해외
						소계
	장외					국내
						해외
						소계
옵션합계						
선도	국내					
	해외					
	소계					
기타 파생상품						
파생상품합계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매수, 매도 :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기재하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재한다.
2. 수수료 : 당해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분으로 자문수수료는 제외하고 수수료-합계는 손익계산서의 수탁수수료와 일치한다.
3. 투자자문계약을 통한 거래와 특정금전신탁도 거래대금 및 수수료에 포함한다.
4. 매수, 매도, 수수료 : 사업연도 누적기준으로 작성한다.
5. 외화증권과 다른 증권이 중복될 경우 외화증권에 기재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수수료현황표**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현황**

(단위 : 원, 명, %)

발행회사명 <sup>1)</sup>	업종구분 <sup>2)</sup>	발행증권종류 <sup>3)</sup>	목표금액(A)	조달성공금액(B) <sup>4)</sup>	성공률(B/A*100)	중개수수료 <sup>5)</sup>	투자자수 <sup>6)</sup>			투자금액 <sup>6)</sup>				
							전문투자자 <sup>7)</sup>	소득요건등 충족 일반투자자 <sup>8)</sup>	기타 일반투자자 <sup>9)</sup>	합계	전문투자자 <sup>7)</sup>	소득요건등 충족 일반투자자 <sup>8)</sup>	기타 일반투자자 <sup>9)</sup>	합계

헤딩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 해당분기에 청약배정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기재

1. 1개 회사 단독발행일 경우 - 발행회사명,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 프로젝트명(참여 대표 중소기업명) 형식으로 기재
2. 발행회사의 영위 업종 기재 예: 출판업, 영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3.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중 기재
4. 청약후 실제 조달된 금액 기재, 조달 실패시 '0'으로 기재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을 기재
6. 청약후 배정된 기준으로 기재, 조달 실패시 '0'으로 기재
7. 자본시장법시행령제118조의17제2항에 해당되는 자
8. 자본시장법시행령제118조의17제3항에 해당되는 자
9. 자본시장법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자(위 7), 8)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투자자

**다. 집합투자 업무**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만 작성

**(1)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사항**

(단위 : 개, 원)

구 분		투자 신탁	투자 회사	투자 유한 회사	투자 합자 회사	투자 조합	투자 의명 조합	합계	
펀드 수	증권집합 투자기구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투자계약증권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부동산집합 투자기구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특별자산집합	특별자산							
		파생형							

	투자기구	소계							
	혼합자산집합 투자기구	혼합자산							
		파생형							
		소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4					14	
	합 계		14					14	
설정 잔액	증권집합 투자기구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투자계약증권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부동산집합 투자기구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	특별자산							
		파생형							
		소 계							
	혼합자산집합 투자기구	혼합자산							
		파생형							
		소 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745,285,518,094				745,285,518,094	
		합 계		745,285,518,094				745,285,518,094	
	순자 산 총액	증권집합 투자기구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투자계약증권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부동산집합 투자기구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		특별자산							
		파생형							
		소 계							
혼합자산집합		혼합자산							



투자기구	파생형						
	소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770,734,923,126					770,734,923,126
합 계		770,734,923,126					770,734,923,126

### 기재상의 주의

1. 모펀드 및 종류형펀드의 운용펀드는 제외한다.
  2. 일임계약(변액보험 등)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증권)주식형 :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상품
    - (증권)채권형 :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
    - (증권)혼합주식형 :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 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이상인 상품
    - (증권)혼합채권형 :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 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이하인 상품
    - (증권)계약형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계약증권(특정 투자자가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으로 운용하는 상품
      - ※투자계약증권에 60%미만 투자 시 혼합주식형으로 분류
    - (증권)재간접형 :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상(또는 연평균 40%이상)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하는 상품
    - (부동산)임대형 : 사무실, 빌딩 등 실물부동산 매입 후 임대사업으로 운용
    - (부동산)대출형 : 시행사에 자금대여 후 분양대금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
    - (부동산)개발형 : 시행사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
    - (부동산)재간접형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 파생형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자본시장법 제9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규약 상 파생결합증권을 60% 이상 포함하는 펀드
      -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분류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2) 집합투자기구 보수율 현황

구 분		운용 보수율	판매 보수율	신탁 보수	일반 사무 관리 보수율	총보 수율 (A)	기타 비용 (B)	총비 용 (A+B)	선취 수수 료	후취 수수 료	매 매 중 개 수 수수 료
집 합 투 자 기 구 종 류	증권 집합 투자 기구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투자계약증권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계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소 계										
	특별자산집 합투자기구	특별자산									
		파생형									
		소 계									
	혼합자산집 합투자기구	혼합자산									
		파생형									
소 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0.1261 9	0.019 35	0.0111 5	0.0065 1	0.163 20	0.0000 0	0.163 20	-		
합 계		0.1261 9	0.019 35	0.0111 5	0.0065 1	0.163 20	-	0.163 20	-		
집 합 투 자 기 구 형 태	투자신탁	0.1261 9	0.019 35	0.0111 5	0.0065 1	0.163 20	-	0.163 20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합 계		0.1261 9	0.019 35	0.0111 5	0.0065 1	0.163 20	-	0.163 20	-		

(단위 : 원, %)

### 기재상의 주의

1. 운용보수율 = SUM(개별집합투자기구 NAV x 개별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보수율)/SUM(개별집합투자기구의 NAV)
2. 소계 :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 혼합채권 등 세부 유형별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율을 유형별 순자산총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3. 합계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각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율을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4. 기타비용의 산정 등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3) 집합투자기구 운용현황

(단위 : 원)

구 분	증권 집합투 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 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 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		합계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유동성자산															
증권	채무증권											15,307,251,532	5,985,869	15,307,251,532	5,985,869
	지분증권											335,326,365,000	192,574,654,377	335,326,365,000	192,574,654,377
	수익증권												75,921,462,037		75,921,462,037
	파생결합 증권														
	기타*														
파생 상품	장내														
	장외												(29,861,695,998)		(29,861,695,998)
부동산															
기타															
												25,429,206,927	163,046,997,879	25,429,206,927	163,046,997,879

####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재한다.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4)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별 현황

#### (가) 집합투자증권 중개 및 매매업자(판매회사) 현황

(단위 : 원, %)

구 분	중개·매매업자	판매금액	비중	계열여부
금융투자업자	한국교통자산운용	155,112,252,853	20.81	N
금융투자업자	하이투자증권	181,637,293,611	24.37	N
금융투자업자	케이프투자증권	16,814,511,733	2.26	N
금융투자업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3,250,473,314	4.46	N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	263,178,144,131	35.31	N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	72,258,513,429	9.70	N
금융투자업자	하나금융투자	10,570,289,372	1.42	N
금융투자업자	KB증권	12,464,039,651	1.67	N
합계		745,285,518,094	100 %	

#### 기재상의 주의

1. 구분 :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회사, 직판, 기타
2. 중개·매매업자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명을 기재한다.

3. 계열여부 : N, Y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신탁업자 현황**

(단위 : 개, 원)

신탁업자	전기			당기			계열여부
	펀드수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펀드수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증권금융	1	198,451,805,344	181,426,044,008	1	198,451,805,344	193,885,996,594	N
농협은행	11	211,397,055,190	218,984,660,725	11	211,397,055,190	224,495,675,228	N
신한은행	2	335,436,657,560	346,372,383,831	2	335,436,657,560	352,353,251,304	N
합계	14	745,285,518,094	746,783,088,564	14	745,285,518,094	770,734,923,126	

기재상의 주의

1. 신탁업자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를 의미한다.
2. 작성대상 :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운용중인 펀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펀드수, 설정잔액 및 순자산총액은 "(1)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사항"의 펀드수, 설정잔액, 순자산총액과 일치하게 기재한다.
4. 계열여부 : N, Y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현황**

(단위 : 개, 원)

회사명 (자사포함)	전기			당기			계열여부
	펀드수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펀드수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우리펀드서비스	12	409,848,860,534	400,410,704,733	12	409,848,860,534	418,381,671,822	N
하나펀드서비스	2	335,436,657,560	346,372,383,831	2	335,436,657,560	352,353,251,304	N
합계	14	745,285,518,094	746,783,088,564	14	740,312,509,438	770,734,923,126	

기재상의 주의

1. 작성대상 :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운용중인 펀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펀드수, 설정잔액 및 순자산총액은 "(1)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사항"의 펀드수, 설정잔액, 순자산총액과 일치하게 기재한다.
3. 계열여부 : N, Y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투자자문 업무(역외투자자문업자 제외)**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만 작성

**(1) 투자권유자문인력 현황**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주요 경력	협회 등록일자	상근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기재한다.
2. 보고기준일 현재 실제로 투자자문업을 담당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3. 담당업무 : 최근 2년간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를 기재한다.
4. 자격증 종류 : 자격시험 합격 또는 경력인정 여부를 기재. 자격시험 합격일 경우 해당 자격증을 기재하고 경력일 경우 "경력인정"으로 기재한다.
5. 자격증취득일 : 8자리(YYYYMMDD)로 기재한다.
6. 주요경력 : 최종학력, 주요근무경력(최근 3년간) 기재한다.
7. 협회등록일 : 8자리(YYYYMMDD)로 기재한다.
8. 상근여부 : "상근" 또는 "비상근" 으로 기재한다.

**(2) 투자자문 계약 현황**

(단위 : 개, 원)

구 분	전월말	당월말	증가	감소
고객수	해당사항 없음			
자문계약건수				
자문계약자산총액				

기재상의 주의

1. 고객수 :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계약체결한 고객(개인고객 및 법인고객 모두 포함)의 수를 기재한다.
2. 자문계약건수 :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투자자문계약건수를 기재하고 "(4) 투자자문재산 현황"의 자문계약건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3. 자문계약자산총액 : 투자자문계약서 상의 자문계약자산을 정한 경우 그 합계를 기재한다.

**(3) 자문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기말	당기말	증감
자문수수료	일반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전문투자자		
	계		
기타수수료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합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기재상의 주의

1.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 자문수수료 : 투자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3. 기타수수료는 성과보수 등을 기재한다.

**(4) 투자자문재산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금융투자업자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은행		보험유계정(고유)		보험유계정(특별)		공제회		연기금		총금		개인		기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 계약 자산	일반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전문투자자																							
	계																							
해외 계약 자산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합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기재상의 주의

1. 건수 : 투자자문계약건수를 기재하고 합계는 “(2) 투자자문 계약 현황”의 자문계약건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2. 금액 : 투자자문계약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는 “(2) 투자자문 계약 현황”의 자문계약자산 총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3.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 기타 :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일반법인 등이 해당한다.
5. 국내계약자산 : 투자자문계약상대방이 국내 고객인 경우를 기재한다.
6. 해외계약자산 : 투자자문계약상대방이 해외 고객인 경우를 기재한다.
7. 투자일임재산 : 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재한다.
8. 집합투자재산 : 펀드에 대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재한다.

**마. 투자일임 업무(역외투자일임업자 제외)**

※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만 작성

**(1) 투자운용인력 현황**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주요 경력	협회 등록 일자	상근 여부	운용중인 계약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기재한다.
2. 보고기준일 현재 실제로 투자일임업을 담당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3. 담당업무 : 최근 2년간 해당 투자운용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를 기재한다.
4. 자격증 종류 : 자격시험 합격 또는 경력인정 여부를 기재. 자격시험 합격일 경우 해당 자격증을 기재하고 경력일 경우 "경력인정"으로 기재한다.
5. 자격증취득일 : 8자리(YYYYMMDD)로 기재한다.
6. 주요경력 : 최종학력, 주요근무경력(최근 5년간) 기재한다.
7. 협회등록일 : 8자리(YYYYMMDD)로 기재한다.
8. 상근여부 : "상근" 또는 "비상근" 으로 기재한다.
9. 운용중인 계약수 : 보고일 현재 운용중인 일임계약 수를 기재한다.
10. 운용규모 : 운용중인 일임계약금액을 기재한다.
11. 운용인력별로 투자일임계약을 나누어 전담하지 않고 팀제로 공동 운용하는 경우, '계약수'와 '운용규모'를 공동 운용하는 전문인력 수로 나누어 기재한다.

**(2) 투자일임 계약 현황**

(단위 : 개, 원)

구 분	전월말	당월말	증가	감소
고객수	해당사항 없음			
일임계약건수				
일임계약자산총액(계약금액)				
일임계약자산총액(평가금액)				

기재상의 주의

1. 고객수 :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계약 체결한 고객(개인고객 및 법인고객 모두 포함)의 수를 기재한다.
2. 일임계약건수 :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투자일임계약건수를 기재하고, "(4) 투자일임재산 현황"의 투자일임계약건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3. 계약금액 : 투자일임계약서 상의 일임계약자산을 정한 경우 그 합계를 기재한다.
4. 평가금액 : 운용중인 일임자산을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3) 일임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기말	당기말	증감
일임수수료	일반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전문투자자			
	계			
기타수수료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합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기재상의 주의

1.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 일임수수료 :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3. 기타수수료는 성과보수 등을 기재한다.

**(4) 투자일임재산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금융 투자 업자	은행		보험 (고유 계정)		보험 (특별 계정)		연· 기금		공제 회		종금		개인		기타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국내 계약 자산	일반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전문투자자																		
	계																		
해외 계약 자산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합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기재상의 주의

1. 건수 : 투자일임계약 건수를 기재하고 합계는 "(2) 투자일임 계약 현황"의 일임계약건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2. 금액 : 투자일임계약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는 "(2) 투자일임 계약 현황"의 일임계약자산총액 (계약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3.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 기타 :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일반법인 등이 해당한다.

**(5)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단위 : 원)

구분	국내	해외	합계
----	----	----	----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현금및 예치금		해당사항 없음		
단기금융상품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파생 상품	장내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				
합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등록여부			
	등록일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재한다.
2. 단기금융상품 : 자본시장법 제229조제5호 및 시행령 제241조의 단기금융상품을 기재하되,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증권, 파생상품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여부는 'Y' 또는 'N'으로 기재한다.
4.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일에는 최초 등록일자(YYYY-MM-DD)로 기재한다

바. 신탁 업무

※ 신탁업자만 작성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

(단위 : 원)

계정과목	말잔	월평	기평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겸영신탁업자 신탁계정)

(단위 : 원)

계정과목	말잔	월평	기평

계정과목	말잔	월평	기평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

(단위 : 원)

계정명	금액
해당사항 없음	

(라) 손익계산서(겸영신탁업자 신탁계정)

(단위 : 원)

계정명	금액
해당사항 없음	

(2) 신탁별 수탁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전기말(A)		신규(B)		종료(C)		당기말 (D=A+B-C)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당사항 없음								

구분	전기말(A)		신규(B)		종료(C)		당기말 (D=A+B-C)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재상의 주의

기타 : 공익신탁 등이 해당한다.

### (3) 자금조달 운용현황

#### (가)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원)

구분		수탁액	차입금	특별보유금	손익	기타	합계
불특정금전신탁		해당사항 없음					
특정 금전 신탁	수시입출금						
	자문형						

구분		수탁액	차입금	특별보유금	손익	기타	합계	
	자사주							
	채권형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주가연계신탁							
	정기예금형							
	퇴직 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A형
								소계
	기타							
금전신탁합계								

기재상의 주의

말잔 기준으로 작성하며 합계는 (나)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의 합계와 일치한다.

(나)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단위 : 원)

구분	대출금	증권													채권	평가	총당금	기타	손익	합계
		회사채	주식	국채·지방채	금융채	기업어음	(직매입)	(A B C P)	(기타)	수익증권	파생금융상품	(E L S)	(기타)	발행어음						
불특정금전신탁	해당사항 없음																			
특정 금전 신탁																			수시	
																			입출금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	
																			주식형 (자문형, 자사주 제외)	
																			주가연계신탁	
																			정기 예금형	
퇴직 연금																			확정 급여 형	
	확정																			

구분	증권															채권	평가	총당금	기타	손익	합계		
	대출금	회사채	주식	국채·지방채	금융채	기업어음	(직매입)	(A B C P)	(기타)	수익증권	파생금융상품	(L S)	(기타)	발행어음	외화증권							기타	소계
		기여형																					
		IRA형																					
		소계																					
		기타																					
		금전신탁합계																					

기재상의 주의

말잔 기준으로 작성하며 합계는 (가)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의 합계와 일치한다.

## 2.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가. 영업용순자본비율

(단위 : 원, %, %p)

구 분	전기말	당기말	증감(②-①)	
	(①)	(②)	금액	비율
1. 영업용순자본(=A-B+C)				
B/S상 순재산액(A)				
차감항목계(B)				
가. 유형자산				
나.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 (삭제)				
라.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마. 특수관계인 채권등				
바. 자회사의 결손액				
사. 채무보증금액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손액				
자. 신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의 16				
차.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카.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타. 자산평가손실				
파. 기타				
가산항목계(C)				
가. 유동자산 대손충당금				
나. 후순위차입금				
다. 금융리스부채				
라. 자산평가이익				
마. 기타				
2. 총위험액(=D+E+F)				
시장위험액(D)				
가. 주식위험액				
나. 금리위험액				
다. 외환위험액				
라. 집합투자증권등위험액				
마. 일반상품위험액				
바. 옵션위험액				
신용위험액(E)				
운영위험액(F=max(가, 나)+다+라)				
가. 법정자본금의 10%				
나. 영업별 영업이익 합계				
다.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라. 집합투자재산위험액				
3. 영업용순자본비율(=(1/2)×100)				
4. 잉여자본(1-2)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투자업규정 제3장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5> 등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내역을 기재한다.
2.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 최근 1년간 평균위험관리등급이 1~3등급일 경우 음(-)의 값을 기재한다.
3. 3. 종금관련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감항목의 경우 “라.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합산하여 기재

## 나. 순자본비율 I (개별)

(단위 : 원, %, %p)

구 분	전기말 (①)	당기말 (②)	증감(②-①)	
			금액	비율
1. 영업용순자본(=A-B+C)				
B/S상 순재산액(A)				
차감항목계(B)				
가. 유형자산				
나.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 (삭제)				
라.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마. 특수관계인 채권등				
바. 자회사의 결손액				
사. 채무보증금액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손액				
자. 신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의 16				
차.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카.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타. 자산평가손실				
파. 기타				
가산항목계(C)				
가. 유동자산 대손충당금				
나. 후순위차입금				
다. 금융리스부채				
라. 자산평가이익				
마. 기타				
2. 총위험액(=D+E+F)				
시장위험액(D)				
가. 주식위험액				
나. 금리위험액				
다. 외환위험액				
라. 집합투자증권등위험액				
마. 일반상품위험액				
바. 옵션위험액				
신용위험액(E)				
운영위험액(F=max(가, 나)+다+라)				
가. 법정자본금의 10%				
나. 영업별 영업이익의 합계				
다.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라. 집합투자재산위험액				
3. 잉여자본(1-2)				
4. 법정자본금				
5. 필요유지자기자본				
6. 순자본비율(=(3/5)×100)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투자업규정 제3장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5> 등에 따른 순자본비율 산출 내역을 기재한다.
2.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 최근 1년간 평균위험관리등급이 1~3등급일 경우 음(-)의 값을 기재한다.



3. 종금관련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감항목의 경우 “라.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다. 순자본비율 I (연결)**

(단위 : 원, %, %p)

구 분	전기말	당기말	증감(②-①)					
	(①)	(②)	금액	비율				
1. 영업용순자본(=A-B+C)	해당사항 없음							
B/S상 순재산액(A)								
차감항목계(B)								
가. 유형자산								
나.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 (삭제)								
라.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마. 특수관계인 채권등								
바. 자회사의 결손액								
사. 채무보증금액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손액								
자. 신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의 16								
차.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카.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타. 자산평가손실								
파. 기타								
가산항목계(C)								
가. 유동자산 대손충당금								
나. 후순위차입금								
다. 금융리스부채								
라. 자산평가이익								
마. 기타								
2. 총위험액(=D+E+F)					해당사항 없음			
시장위험액(D)								
가. 주식위험액								
나. 금리위험액								
다. 외환위험액								
라. 집합투자증권등위험액								
마. 일반상품위험액								
바. 옵션위험액								
신용위험액(E)								
운영위험액(F=max(가, 나)+다+라)								
가. 법정자본금의 10%								
나. 영업별 영업이익 합계								
다.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라. 집합투자재산위험액								
3. 잉여자본(1-2)	해당사항 없음							
4. 법정자본금								
5. 필요유지자기자본								
6. 순자본비율(=(3/5)×100)								

기재상의 주의

1. 금융투자업규정 제3장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5> 등에 따른 순자본비율 산출 내역을 기재한다.

2.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가감 : 최근 1년간 평균위험관리등급이 1~3등급일 경우 음(-)의 값을 기재한다.
3. 종금관련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감항목의 경우 “라.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 라. 레버리지 비율

(단위 : 원, %, %p)

구 분	전기말	당기말	증감(②-①)
	(①)	(②)	금액
1. 총자산(=A-B)	해당사항 없음		
B/S상 자산총계(A)			
차감항목계(B)			
가. 투자자예치금(예금, 신탁)			
나. 종금계정 자산			
다. 대손준비금			
라. 장내 위탁매매 일시계상 미수금			
마. 장외 채권 및 외국환 거래 일시계상 미수금			
바. 공모주 청약 일시계상 미수금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등 수탁금			
2. 자기자본(=가-나)			
가. B/S상 자기자본			
나. 대손준비금			
3. 레버리지비율(=(1/2)×100)			

####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자예치금(예금, 신탁)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신탁)+청약예치금(투자자분)+장내파생상품거래예치금(투자자분)+장내파생상품매매증거금(투자자분)
2. 대손준비금 : 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기재한다.
3. 장내 위탁매매 일시계상 미수금 : 장내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으로 한다.
4. 장외 채권 및 외국환 거래 일시계상 미수금 : 채권 및 외국환 장외거래에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
5. 공모주 청약 일시계상 미수금 :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및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단기금융업무 등 수탁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
7. 원금비보장 매도파생결합증권관련 가산액 : 금융투자업시행세칙 [별표10의1]에 따라 산정한 금액

마. 최소영업자본액

(단위 : 원)

구 분	전월말(①)		당월말(②)		증감(②-①)	
	대상 금액	필요 자본	대상 금액	필요 자본	대상 금액	필요 자본
1. 자기자본		7,664.00 1,047		7,672, 712.5 98		
2. 최소영업자본액(A=Aa+Ab+Ac)		1,234.05 7,212		1,241, 242.7 62		
필요유지자기자본(Aa)	1,000.00 0,000	700,000, 000	1,000,000, 00	700,0 00,00 0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Ab)		224,034, 927		231.2 20,47 7		
집합투자재 산					-	-
증권집합투자기구						
기타 집합투자기구	746,783, 088,564	224,034, 927	770,734,92 3,126	231.2 20,47 7	23,951.8 34,562	7,185.55 0
투자일임재산					-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Ac)		310,022, 285		310.0 22,28 5		
증권 계						
지분 증권						
해외현지법인 지분	2,633.89 2,834	-	2,633,892.8 34	-		
관계회사투자지분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채무 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인 경우						
그외의 경우						
집합 투자 증권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기타증권						
파생상품						
대출채권	4,133,63 0,471	310,022, 285	4,133,630,4 71	310.0 22,28 5		
3. 최소영업자본액2(B=Aa+(Ab+Ac) * 50%)		967,028, 606		970.6 21,38 1		

기재상의 주의

1. 필요유지자기자본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GA002)상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을 대상 금액  
    란에 기재하고 필요자본에는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에 70%를 곱한 값을 기재. 다만, 인가를

받은 공모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대상 금액란에는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에서 20억원을 차감한 값을 기재하고, 동 차감 후의 값에 70%를 곱한 값을 필요자본란에 기재

2.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및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8-2 참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7항에 따른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는 GA158(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보고서에 첨부

### Ⅲ.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금액
자산총계	8,089,835,644
I. 현금 및 예치금	173,973,799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3,973,799
1) 현금	-
2) 정기에·적금	-
3) 보통예금	167,044,956
4) 당좌예금	-
5) 외화예금	6,928,843
6) 양도성예금증서	-
7) MMDA	-
8) MMF	-
9) 금융어음	-
10) 기타	-
2. 예치금	-
1) 청약예치금	-
① 자기분	-
② 투자자분	-
2)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
① 일반예수분	-
② 장내파생상품거래분	-
③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분	-
3)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
① 일반예수분	-
② 장내파생상품거래분	-
③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분	-
4) 대차거래이행보증금	-
5) 매매예납금	-
6) 장내파생상품거래예치금	-

① 자기분(국내)	-
② 자기분(해외)	-
③ 투자자분(국내)	-
④ 투자자분(해외)	-
7) 장내파생상품매매증거금	-
① 자기분(국내)	-
② 자기분(해외)	-
③ 투자자분(국내)	-
④ 투자자분(해외)	-
8) 유통금융차주담보금	-
9) 유통금융담보금	-
10) 장기성예금	-
11) 특정예금 등	-
12) 신탁공탁금	-
13) 기타	-
II. 증권	-
1. 당기손익인식증권	-
1) 주식	-
2) 신주인수권증서	-
3) 국채·지방채	-
4) 특수채	-
5) 회사채	-
6) 집합투자증권	-
① 미매각집합투자증권	-
② 기타집합투자증권	-
7) 기업어음증권	-
8) 외화증권	-
① 외화주식	-
② 외화채권	-
③ 기타	-
9) 기타	-
2. 매도가능증권	-
1) 주식	-
2) 출자금	-
3) 국채·지방채	-
4) 특수채	-
5) 회사채	-
6) 집합투자증권	-
① 미매각집합투자증권	-
② 기타집합투자증권	-
7) 기업어음증권	-
8) 외화증권	-
① 외화주식	-
② 외화채권	-
③ 기타	-
9) 기타	-
3. 만기보유증권	-
1) 국채·지방채	-
2) 특수채	-

3) 회사채	-
4) 기타	-
4. 관계회사투자지분	-
1) 연결대상회사 투자지분	-
① 주식	-
② 출자금	-
③ 집합투자증권	-
2) 비연결대상회사 투자지분	-
① 주식	-
② 출자금	-
③ 집합투자증권	-
5. 파생결합증권	-
1) 주가연계증권	-
2) 주식워런트증권	-
3) 기타	-
4)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평가조정액	-
5) 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Ⅲ. 파생상품자산	-
1. 이자율관련	-
1) 이자율선도	-
2) 이자율스왑	-
3) 매입이자율옵션	-
2. 통화관련	-
1) 통화선도	-
2) 통화스왑	-
3) 매입통화옵션	-
3. 주식관련	-
1) 주식선도	-
2) 주식스왑	-
3) 매입주식옵션	-
4. 신용관련	-
1) 신용스왑	-
2) 매입신용옵션	-
3) 기타	-
5. 상품관련	-
1) 상품선도	-
2) 상품스왑	-
3) 매입상품옵션	-
6. 기타파생상품자산	-
7. 파생상품 신용위험평가조정액	-
8. 파생상품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Ⅳ. 대출채권	4,133,630,471
(현재가치할인차금)(-)	-
(현재가치할증차금)(+)	-
(이연대출부대손익)	-
1. 콜론	-
2. 신용공여금	-
1) 신용거래융자금	-
2) 주식청약자금 대출금	-

3) 증권매입자금 대출금	-
4) 증권담보대출금	-
5) 기타	-
3. 환매조건부매수	-
4. 대여금	4,133,630,471
1) 증권저축할부대여금	-
2) 임직원대여금	-
3) 기타	4,133,630,471
5. 대출금	-
6. 대출금(종금계정)	-
7. 할인어음(종금계정)	-
8. 매입 대출채권	-
9. 대지급금	-
1)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
2) 어음지급보증 대지급금(종금계정)	-
3) 사고대지급금	-
4) 우선대지급금	-
5) 기타	-
10. 부도채권	-
11. 부도어음	-
12. 사모사채	-
13. 신탁계정대	-
14. 종금계정대	-
15. 기타 대출채권	-
16. 대손충당금(-)	-
1) 콜론대손충당금	-
2) 신용공여금대손충당금	-
3) 환매조건부매수대손충당금	-
4) 대여금대손충당금	-
5) 대출금대손충당금	-
6) 대출금(종금계정)대손충당금	-
7) 할인어음(종금계정) 대손충당금	-
8) 매입대출채권 대손충당금	-
9) 대지급금대손충당금	-
10) 부도채권 대손충당금	-
11) 부도어음 대손충당금	-
12) 사모사채 대손충당금	-
13)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
14) 종금계정대 대손충당금	-
15) 기타 대손충당금	-
V. 유형자산	189,994,767
(손상차손누계액)	-
1. 토지	-
2. 건물	-
3. 구축물	-
4. 차량운반구	23,668,312
5. 비품	76,781,000
6. 건설중인자산	-
7. 운용리스자산(종금계정)	-

8. 선급리스자산(종금계정)	-
9. 기타	335,633,404
10. 감가상각누계액(-)	246,087,949
1) 건물	-
2) 구축물	-
3) 차량운반구	4,339,191
4) 비품	64,565,958
5) 기타	177,182,800
11. 감가상각누계액(종금계정)(-)	-
12. 처분손실충당금(종금계정)(-)	-
VI. CMA운용자산(종금계정)	-
1. CMA 현금과예금	-
2. CMA 증권	-
3. CMA 할인어음	-
4. CMA 기타	-
5. 대손충당금(종금계정)(-)	-
VII. 리스자산(종금계정)	-
1. 금융리스채권	-
2. 기타	-
3. 대손충당금(종금계정)(-)	-
VIII. 기타자산	3,592,236,607
(현재가치할인차금)(-)	-
(현재가치할증차금)(+)	-
1. 미수금	2,609,384
1) 자기매매미수금	-
① 주식미수금	-
② 채권미수금	-
③ 장내파생상품미수금	-
④ 기타	-
2) 위탁매매미수금(결제일)	-
① 주식미수금	-
② 채권미수금	-
③ 장내파생상품미수금	-
④ 기타	-
3) 장내거래미수금(거래일)	-
① 고객미수금	-
② 한국거래소미수금	-
4) 신탁보수미수금	-
5) 기타	2,609,384
2. 미수수익	274,662,558
1) 미수수료	274,662,558
① 미수수탁수수료	-
② 미수인수및주선수료	-
③ 미수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④ 미수파생결합증권판매수수료	-
⑤ 미수투자자문수수료	-
⑥ 미수투자일임수수료	-
⑦ 미수투자신탁위탁자보수	-
⑧ 미수투자회사운용수수료	-



⑨ 미수신탁보수	-
⑩ 기타	274,662,558
2) 미수이자	-
① 미수신용거래융자이자	-
② 미수채권이자	-
③ 미수신탁계정대이자	-
④ 기타	-
3) 미수배당금	-
4) 미수분배금	-
5) 기타	-
3. 선급금	194,467,998
1) 채권경과이자	-
2) 수익증권경과분배금	-
3) 양도성예금증서경과이자	-
4) 기타	194,467,998
4. 선급비용	1,484,800
5. 선급제세	5,902,824
1) 선급법인세	-
2) 선급부가가치세	-
3) 기타	5,902,824
6. 대리점	-
7. 본·지점	-
8. 선물자기거래정산차금	-
1) 국내분	-
2) 해외분	-
9. 보증금	71,796,875
1) 전세권	-
2) 전신전화가입권	-
3) 임차보증금	-
4) 회원보증금	-
5) 기타	71,796,875
10. 투자부동산	-
(손상차손누계액)	-
1) 토지	-
2) 건물	-
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1. 손해배상공동기금	-
1) 증권시장공동기금	-
2) 파생상품시장공동기금	-
3) 기타	-
12. 무형자산	407,419,334
(손상차손누계액)	-
1) 영업권	-
2) 개발비	-
3) 소프트웨어	71,997,334
4) 회원권	335,422,000
5) 기타	-
13. 가지급금	-
14. 이연법인세자산	-

15. 일반상품	-
16. 기타	2,633,892,834
17. 대손충당금(-)	-
1) 미수금대손충당금	-
2) 미수수익대손충당금	-
① 미수수료대손충당금	-
② 미수이자대손충당금	-
③ 기타대손충당금	-
3) 선급금대손충당금	-
4) 기타대손충당금	-
부채총계	417,123,046
I. 예수부채	-
1. 투자자예수금	-
1) 위탁자예수금	-
2)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3) 청약자예수금	-
4) 저축자예수금	-
5) 조건부예수금	-
6)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7) 기타	-
2. 수입담보금	-
1)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
2) 신용대주담보금	-
3) 신용공여담보금	-
4) 기타	-
3. 리스보증금(종금계정)	-
4. CMA수탁금(종금계정)	-
5. 기타	-
II. 차입부채	-
(현재가치할인차금)(-)	-
(현재가치할증차금)(+)	-
1. 콜머니	-
2. 차입금	-
1) 당좌차입	-
2) 은행차입금	-
3) 증금차입금	-
4) 외화차입금	-
5) 기타	-
3. 환매조건부매도	-
4. 매도증권	-
1) 주식	-
2) 국채·지방채	-
3) 특수채	-
4) 회사채	-
5) 기타	-
5. 매도파생결합증권	-
1) 매도주가연계증권	-
2) 매도주식워런트증권	-
3) 기타	-

4) 매도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평가조정액	-
5) 매도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6. 사채	-
(사채발행차금)	-
7. 후순위사채	-
(사채발행차금)	-
8. 후순위차입금	-
9. 발행어음(종금계정)	-
10. 기타	-
Ⅲ. 파생상품부채	-
1. 이자율관련	-
1) 이자율선도	-
2) 이자율스왑	-
3) 매도이자율옵션	-
2. 통화관련	-
1) 통화선도	-
2) 통화스왑	-
3) 매도통화옵션	-
3. 주식관련	-
1) 주식선도	-
2) 주식스왑	-
3) 매도주식옵션	-
4. 신용관련	-
1) 신용스왑	-
2) 매도신용옵션	-
3) 기타	-
5. 상품관련	-
1) 상품선도	-
2) 상품스왑	-
3) 매도상품옵션	-
6. 기타파생상품부채	-
7. 파생상품 신용위험평가조정액	-
8. 파생상품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Ⅳ. 기타부채	417,123,046
(현재가치할인차금)(-)	-
(현재가치할증차금)(+)	-
1. 퇴직급여부채	-
1) 확정급여채무	-
2)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
3)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4) 사외적립자산(-)	-
① 퇴직연금(-)	-
② 기타사외적립자산(-)	-
2. 충당부채	-
1) 채무보증충당부채	-
2) 복구충당부채	-
3) 특별대손충당금	-
4) 신탁위험충당금	-

5) 기타	-
3. 미지급법인세	-
4. 미지급배당금	-
5. 미지급금	224,500,462
6. 미지급비용	87,995,947
7. 임대보증금	-
8. 선수금	72,400,000
9. 선수수익	-
10. 가수금	-
11. 대리점	-
12. 본·지점	-
13. 선물자기거래 정산차금	-
1) 국내분	-
2) 해외분	-
14. 이연법인세부채	23,314,817
15. 제세금예수금	8,911,820
16. 신탁계정차	-
17. 종금계정차	-
18. 기타	-
V. 요구불상환지분	-
1. 상환우선주	-
2. 기타	-
자본총계	7,672,712,598
I. 자본금	8,000,000,000
1. 보통주자본금	8,000,000,000
2. 우선주자본금	-
1) 상환우선주	-
2) 전환우선주	-
3) 기타	-
II. 자본잉여금	-
1. 주식발행초과금	-
2. 감자차익	-
3. 자기주식처분이익	-
4. 기타자본잉여금	-
III. 자본조정	(116,607,000)
1. 주식할인발행차금	(116,207,000)
2. 자기주식	-
3. 자기주식처분손실	-
4. 주식매입선택권	-
5. 신주청약증거금	-
6. 기타	(400,00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19,947,686)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1) 주식	-
2) 출자금	-
3) 국채·지방채	-
4) 특수채	-
5) 회사채	-
6) 집합투자증권	-

7) 외화증권	-
① 외화주식	-
② 외화채권	-
③ 기타	-
8) 기타	-
2. 지분법 자본변동	(719,947,686)
3.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	-
4.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5. 외환차이누계액	-
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7. 기타	-
V. 이익잉여금	509,267,284
1. 이익준비금	-
2. 대손준비금	-
3. 전자금융사고배상준비금	-
4. 기타법정준비금	-
5. 신탁사업적립금	-
6. 임의적립금	-
6. 미처분이익잉여금	509,267,284
(당기순이익)	(488,437,099)

#### 기재상의 주의

대차대조표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1> 에 따라 기재한다.

##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금액
I. 영업수익	691,081,361
1. 수수료수익	691,081,361
1) 수탁수수료	0
① 유가증권시장	
② 코스닥시장	
③ 파생상품시장	
④ 외화증권수탁	
⑤ 채권장외증개	
⑥ 전자장외증권시장	
⑦ 해외파생상품	
⑧ 기타	
2) 인수 및 주선수수료	0
① 원화증권	
② 외화증권	
3) 사채모집수탁수수료	
4)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0
① 판매수수료	
② 판매보수	
5) 자산관리수수료	0
① 투자자문	
② 투자일임	

③ 기타	
6)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691,081,361
① 투자신탁위탁자보수	
② 투자회사운용수수료수익	691,081,361
③ 기타	
7) 어음지급보증료	
8) 매수및합병수수료	0
① 평가수수료	
② 매수합병중개수수료	
③ 구조조정및금융상담수수료	
④ 기타	
9) 파생결합증권판매수수료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10) 신탁보수	
① 금전신탁	
② 토지신탁	
③ 관리신탁	
④ 처분신탁	
⑤ 담보신탁	
⑥ 분양관리신탁	
⑦ 기타	
11)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수수료	
① 지분증권	
② 채무증권	
③ 투자계약증권	
12) 지급보증료	
13) 송금수수료	
14) 대리업무보수	
15) 기타	
2.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이익	
① 주식처분이익	
② 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③ 채권처분이익	
④ 집합투자증권처분이익	
⑤ 기업어음증권처분이익	
⑥ 당기손익인식증권상환이익	
⑦ 기타	
2)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이익	
① 주식평가이익	
② 신주인수권평가이익	
③ 채권평가이익	
④ 집합투자증권평가이익	
⑤ 기업어음증권평가이익	
⑥ 기타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① 주식처분이익	

② 채권처분이익	
③ 집합투자증권처분이익	
④ 기업어음증권처분이익	
⑤ 매도가능증권상환이익	
⑥ 기타	
4)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① 채권매매이익	
② 채권상환이익	
③ 기타	
5) 증권손상차손환입	
① 채권손상차손환입	
② 기타손상차손환입	
6) 매도증권평가이익	
① 주식평가이익	
② 채권평가이익	
③ 기타	
7) 파생결합증권처분이익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8) 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9) 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10) 매도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① 매도추가연계증권	
② 매도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11) 매도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① 매도추가연계증권	
② 매도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3. 파생상품 관련 이익	
1) 파생상품거래이익	
① 이자율관련거래이익	
② 통화관련거래이익	
③ 주식관련거래이익	
④ 신용관련거래이익	
⑤ 상품관련거래이익	
⑥ 기타파생상품관련거래이익	
2) 파생상품평가이익	
① 이자율관련평가이익	
② 통화관련평가이익	
③ 주식관련평가이익	
④ 신용관련평가이익	

⑤ 상품관련평가이익	
⑥ 기타과생상품관련평가이익	
4. 이자수익	0
1) 신용공여이자	0
① 신용거래용자이자	
② 주식청약자금대출이자	
③ 증권매입자금대출이자	
④ 예탁증권담보대출이자	
⑤ 기타	
2) 매입대출채권이자	
3) 대출금이자	
4) 할인어음이자	
5) 채권이자	
6) 차주매각대금이용료	
7) 기업어음증권이자	
8) 증금예치금이자	
9) 양도성예금증서이자	
10) 금융기관예치금이자	
11) 콜론이자	
12) 환매조건부매수이자	
13) 양도성예금증서거래이익	
14) 대지급금이자	
15) 예금이자	
16) 미수금이자	
17) 신탁계정대이자	
18) 종금계정대이자	
19) 기타이자	
5.대출채권 관련 이익	
1) 대출채권매각이익	
2) 대출채권평가이익	
3) 대손충당금환입	
4) 기타	
6.외환거래이익	0
1) 외환차익	
2) 외화환산이익	
7. 기타의 영업수익	
1) 배당금수익	
2) 분배금수익	
3) 별도예치금평가이익	
4) CMA운용수익(종금계정)	
① CMA할인어음이자	
② 기타	
5) CMA운용수수료 (종금계정)	
6) 리스수익(종금계정)	
① 금융리스이자	
② 운용리스료수입	
③ 리스자산처분이익	
④ 기타	
7) 일반상품 처분이익	



8) 일반상품 평가이익	
9) 증당금환입액	
① 채무보증증당금환입	
② 복구증당부채환입	
③ 신탁위험증당금환입	
④ 기타	
10) 기타대손증당금환입	
11) 파생결합증권신용위험평가조정환입	
12) 파생상품신용위험평가조정환입	
13) 파생결합증권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환입	
14) 파생상품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환입	
15) 기타	
8. 기타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이익	
1)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① 예치금처분이익	
② 기타	
2) 기타금융자산평가이익	
① 예치금평가이익	
② 기타	
3) 기타금융부채처분이익	
① 예수부채처분이익	
② 차입부채처분이익	
③ 기타	
4) 기타금융부채평가이익	
① 예수부채평가이익	
② 차입부채평가이익	
③ 기타	
5) 기타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II. 영업비용	1,180,820,851
1. 수수료비용	
1) 매매수수료	
① 국내분	
② 해외분	
2) 투자상담사수수료	
3) 투자자문수수료	
4) 투자일임수수료	
5) 운용위탁수수료	
6) 송금수수료	
7) 기타수수료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손실	
① 주식처분손실	
② 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	
③ 채권처분손실	
④ 집합투자증권처분손실	
⑤ 기업어음증권처분손실	
⑥ 당기손익인식증권상환손실	
⑦ 기타	

2)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손실	
① 주식평가손실	
② 신주인수권평가손실	
③ 채권평가손실	
④ 집합투자증권평가손실	
⑤ 기업어음증권평가손실	
⑥ 기타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① 주식처분손실	
② 채권처분손실	
③ 집합투자증권처분손실	
④ 기업어음증권처분손실	
⑤ 매도가능증권상환손실	
⑥ 기타	
4)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① 채권처분손실	
② 채권상환손실	
③ 기타	
5) 증권손상차손	
① 주식손상차손	
② 채권손상차손	
③ 기타	
6) 매도증권평가손실	
① 주식평가손실	
② 채권평가손실	
③ 기타	
7) 파생결합증권처분손실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8) 파생결합증권평가손실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9) 파생결합증권상환손실	
① 추가연계증권	
② 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10) 매도파생결합증권평가손실	
① 매도추가연계증권	
② 매도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11) 매도파생결합증권상환손실	
① 매도추가연계증권	
② 매도주식워런트증권	
③ 기타	
3. 파생상품 관련 손실	
1) 파생상품거래손실	
① 이자율관련거래손실	

② 통화관련거래손실	
③ 주식관련거래손실	
④ 신용관련거래손실	
⑤ 상품관련거래손실	
⑥ 기타파생상품관련거래손실	
2) 파생상품평가손실	
① 이자율관련평가손실	
② 통화관련평가손실	
③ 주식관련평가손실	
④ 신용관련평가손실	
⑤ 상품관련평가손실	
⑥ 기타파생상품관련평가손실	
3) 파생상품손상차손	
4. 이자비용	0
1) 차입금이자	0
① 증금차입금이자	
② 은행차입금이자	
③ 기타	
2) 대주매각대금이용료	
3) 투자자예탁금이용료	
4) 환매조건부매도이자	
5)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손실	
6) 콜머니이자	
7) 사채이자	
8) 발행어음이자	
9) 신탁계정차이자	
10) 증금계정차이자	
11) CMA수탁금이자(증금계정)	
12) 요구불상환지분관련이자	
13) 기타	
5.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출채권매각손실	
2) 대출채권평가손실	
3) 대손상각비	
4) 기타	
6. 외환거래손실	0
1) 외환차손	
2) 외화환산손실	
7. 판매비와관리비	1,180,820,851
1) 급여	566,691,827
① 임원	
② 직원	566,691,827
2) 퇴직급여	
① 임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② 직원	
(확정기여형)	52,168,912
(확정급여형)	

3) 명예퇴직금	
4) 복리후생비	33,321,379
5) 전산운용비	42,265,682
6) 임차료	163,726,480
7) 지급수수료	49,382,600
8) 접대비	36,001,005
9) 광고선전비	0
10) 감가상각비	54,671,022
11) 조사연구비	
12) 연수비	
13) 무형자산상각비	13,363,749
14) 세금과공과금	19,162,070
15) 업무위탁수수료	
16) 판매부대비	
17) 발행비	
18) 등기소송비 및 공고비	
19) 회의비	
20) 인쇄비	1,590,600
21) 여비교통비	13,290,490
22) 차량유지비	5,260,100
23) 소모품비	2,600,169
24) 수도광열비	2,234,833
25) 보험료	7,456,119
26) 행사비	
27) 기타	117,633,814
8. 기타의 영업비용	
1) 별도예치금평가손실	
2) 리스비용(중금계정)	
①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② 리스지급수수료	
③ 리스자산처분손실	
④ 금융리스정산손실	
⑤ 기타	
3) 일반상품 처분손실	
4) 일반상품 평가손실	
5) 충당금전입액	
① 채무보증충당금전입액	
② 복구충당부채전입액	
③ 신탁위험충당금전입액	
④ 기타	
6) 기타대손상각비	
7) 파생결합증권신용위험평가조정전입	
8) 파생상품신용위험평가조정전입	
9) 파생결합증권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전입	
10) 파생상품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전입	
11) 기타	
9. 기타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실	
1)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① 예치금처분손실	

② 기타	
2) 기타금융자산평가손실	
① 예치금평가손실	
② 기타	
3) 기타금융부채처분손실	
① 예수부채처분손실	
② 차입부채처분손실	
③ 기타	
4) 기타금융부채평가손실	
① 예수부채평가손실	
② 차입부채평가손실	
③ 기타	
5) 기타금융자산손상차손	
Ⅲ. 영업이익(손실)	(489,739,490)
Ⅳ. 영업외수익	2,237,615
1. 유형자산처분이익	
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3. 임대료	
4. 지분법이익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7. 관계회사투자지분처분이익	
8. 상각채권추심이익	
9. 본·지점이자	
10. 자산수증이익	
11. 채무면제이익	
12. 보험차익	
13.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4.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5. 기타자산손상차손환입	
16. 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17. 기타	2,237,615
Ⅴ. 영업외비용	935,224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투자부동산처분손실	
3. 지분법손실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6. 관계회사투자지분처분손실	
7. 기부금	
8. 본·지점이자	
9. 재해손실	
10. 사고손실	
11. 배상손실	
12. 우선지급손실	
13. 채무면제손실	
14. 유형자산손상차손	
15. 무형자산손상차손	
16. 기타자산손상차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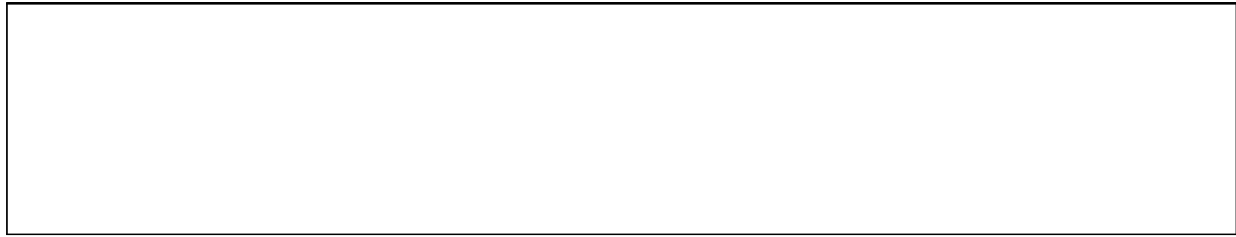
17. 유형자산재평가손실	
18. 기타	935,224
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488,437,099)
Ⅶ.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Ⅷ. 계속사업이익(손실)	(488,437,099)
Ⅸ. 중단사업손익	
X. 당기순이익(손실)	(488,437,099)
(대손준비금적립액)	
(대손준비금적립후 당기순이익)	(488,437,099)
X I. 기타포괄손익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 지분법 자본변동	
3.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	
4.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5. 외환차이(손실)	
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7. 기타	
8.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X II. 총포괄이익(손실)	(488,437,099)

### 기재상의 주의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1> 에 따라 기재한다.

### 3. 각주사항

계정과목	금액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각주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1> 에 따라 기재한다.

#### I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 현황

성명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이해관계	직위	비고
성훈진	해당사항 없음	대표이사	
권오현	해당사항 없음	비상무이사	
김원진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 기재상의 주의

1.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2. 직위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근감사위원, 비상근감사위원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비고란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사항이나 권한행사를 위한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 나.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명	구성	성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수, 사외이사 여부 등을 기재한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감사	장민규	(주)국제선박투자운용, 한진해운	

###### 기재상의 주의

주요경력에는 약력 등을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3. 계열회사 등의 현황

###### 가. 계열회사의 현황

###### (1)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현황



기업집단 대표회사	기업집단 소속회사	투자지분율	상장여부	비고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1.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2. 투자지분율 :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한 경우 그 지분율을 기재한다.
3. 상장여부 :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장여부에 대해 상장, 비상장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2)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현황**

(단위 : 주, 원)

구분	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여부	법인명	출자목적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피출자법인		비고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수량	취득(처분)가액	평가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총자산	당기순이익	
해외(비상장)	지분용자주식	X	KOTAM PTE. LTD.	자회사	216,137	100	2,633,892,834	-	-	-	216,137	100	2,633,892,834	4,575,068,721	252,316,781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구분 : 법인의 소재지 및 상장여부에 따라 “국내(상장), 국내(비상장)” 또는 “해외(상장), 해외(비상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계정과목 : 출자에 대한 회계상 계정과목을 기재한다.
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여부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해당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기재한다.
4.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 : 계열회사 등의 최근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기재한다.
5. 증감내역 :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당기말(업무보고서 기준일)까지 증감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되, 감소인 경우 음의 값을 기재한다.
6. 비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자회사, 계열회사 등의 여부를 기재한다.

**나. 타법인 출자현황**

(단위 : 주, 원)

구분	상장여부	계정과목	법인명 또는 종목명	출자목적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적요		배당금수익	비고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수량	장부가액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취득(처분)일자	원인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1. 작성대상 :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이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초 또는 기말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한다.
2. 타법인출자 현황은 타법인에 대한 주식, 출자금(사채 제외) 등을 작성하되,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를 표시한다.
3. 계정과목은 주식, 출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적요에는 취득(처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하되, 취득(처분)원인은 외국(인)과의 합작설립투자, 정부의 인·허가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대량주식 취득승인, 신주인수권행사, 전환권 행사, 담보권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그 내용을 기재한다.
5. 배당금수익에는 출자 대상회사의 배당률 및 배당금수익 총액을 확정된 시점에서 기재한다.
6. 타법인출자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 등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7. 외화표시 금액의 경우 당기말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외화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8. 당기말(업무보고서 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존재하였던 출자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감액처리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지 않고 있는 출자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9. 증감내역 : 당해 사업연도중 증감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되 감소인 경우 음의 값을 기재한다.

## V. 주주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주 구분
			기 초		증 감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수	지분율	
(주)국제선박투자운용	최대주주	보통주	1,220,000	76.3%			1,220,000	76.3%	최대주주
(주)KEB하나은행		보통주	120,000	7.5%			120,000	7.5%	
(주)한이스프레스		보통주	60,000	3.8%			60,000	3.8%	
(주)극동티엘에스		보통주	60,000	3.8%			60,000	3.8%	
(주)국제해양기술		보통주	120,000	7.5%			120,000	7.5%	
선진로지스틱스(주)		보통주	20,000	1.3%			20,000	1.3%	
(주)케이마린케이칼		보통주	-	0.0%			-	0.0%	

#### 기재상의 주의

1. 주주구분 : 최대주주, 주요주주, 기타 5% 이상 소유주주, 소액주주로 구분한다.
2. 최대주주 : 자본시장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로서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
3. 성명 : 소액주주의 경우 소액주주의 인원수를,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으로 기재한다.
4. 관계 :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되, 소액주주 및 기타 5% 이상인 주주의 경우 생략한다.
5. 주요주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
6. 기타 5% 이상 소유주주 :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5% 이상 보유한 주주
7. 증가, 감소 :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당기말(업무보고서 기준일)까지 증가, 감소된 주식수를 기재한다.
8. 특수관계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단위 : 주, %)

최대주주명	최대주주 변동일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최대주주 : 자본시장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로서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
2. 소유주식수, 지분율 :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3. 사업연도 중 변동된 내역을 기재한다.

## V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조직기구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부서수(점포수)	인원수
본부부서	4	13
국내지점	0	0
국내영업소	0	0
국내사무소	0	0
해외지점	0	0
해외사무소	0	0
해외현지법인	1	3

#### 기재상의 주의

1. 국내지점 :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한다.
2. 본부부서 : '부서수'에는 본사 내 부서의 수를 기재한다.
3. 본부부서, 국내지점, 국내영업소, 국내사무소,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 인원수의 합은 하기 '2 인력현황 - 가. 일반현황'의 인원 합계와 일치
4. 비상근 임원 등의 경우는 본부부서 인원수에 포함
5. 국내사무소 : 금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점과의 연락 및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점포

### 2. 인력현황

#### 가. 일반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 내		해 외		합 계	
		남	여	남	여		
비등기임원		1				1	
등기이사	사내이사	2				2	
	사외이사	1				1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		1				1	
직원	정규직	전체	4	4		8	
		일반직	4	4		8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체					
		전문인력					
		그외					
계		9	4			13	
투자권유대행인							

#### 기재상의 주의

1. 휴직 및 파견 포함
2. 해외인원 : 우리나라 법인에서 직접고용한 임직원에 한정하여 산출(해외사무소 및 지점 포함, 해외현지법인 제외)

3. 정규직원 : 일정한 계약기간 없이 고용계약이 지속되는 직원
  - 일반직 : 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이 아닌 직원을 의미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인력 및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 \*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은 비서, 기사 등 서무별정직원 및 창구텔러전담직원, 전화상담원 등 특정직무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고용의 기한이 정함이 없이 직접 채용한 직원(내규, 내부 인사지침, 인사관리DB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
4. 비정규직 : 일정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직원
  - 전문인력 : 비정규직 중 자격증, 학위, 경력 등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직군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
5. 비등기임원 : 등기되지 않았으나, 임원이란 명칭하에 경영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6. 경영이사 :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이사
7.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등기이사나 비등기임원으로 분류(감사위원회 위원을 감사로 분류하지 말 것)
8. 전체 합계는 상기 '1. 조직기구 현황'의 인원수 합계와 일치

## 나. 임원의 현황

(단위 : 주)

성명	직위	생년 월일	등기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최초 선임일	최근 선임일	임기 만료일	상근 여부	주식보유수	
										우선 주	보통주
성훈진	대표이사	19740206	등기	업무총괄	하나F&I 유암코 KB자산운용	20210531	20210531	20240531	상근	0	0
권오현	비상무이사	19591216	등기	선박기술	국제해양기술 STX조선	20170331	20200331	20230331	비상근	0	0
김원진	사내이사	19920214	등기	항공투자	한국교통자산 운용 국제선박투자 운용	20210531	20210531	20240531	상근	0	0
장민규	감사	19541226	등기	감사	(주)국제선박투 자운용 한진해운	20220331	20220331		비상근	0	0

### 기재상의 주의

1. 작성대상 : 등기임원 대상으로 기재한다.
2. 등기여부 :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 비등기임원의 경우 '비등기'로 기재한다.
3. 담당업무 : 총괄, 경영기획, 법인영업, 기업금융 등 당해 임원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를 기재한다.
4. 주요경력 : 최종 학력 및 주요 근무 경력을 기재한다.

## VII.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내역

(단위 : 원)

성명 (법인명)	관계	계정과목	변동내역				미수이자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케이마린오션 로지스틱스	계열회사	단기대여금	800,000,000	0	0	800,000,000	105,976,441	
KAVIATION	계열회사	장기대여금	3,333,630,471	0	0	3,333,630,471	168,686,117	
합계			4,133,630,471	0	0	4,133,630,471	274,662,558	

#### 기재상의 주의

1. 가지급금 및 대여금 내역은 사업연도중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대주주를 위하여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증권을 대여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사업연도중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증권의 대여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별 기초(사업연도초) 또는 기말(업무보고서 기준일)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내역을 기재한다.
3. 관계는 '본인'(최대주주 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와의 관계 기재)',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종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소분류)에 따른다.
5. 미수이자는 약정상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된 금액(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비고란에는 대여등의 조건(이율, 기간, 기타 조건 등), 외화로 가지급 또는 대여한 경우 해당외화금액,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대여기간연장, 재약정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담보제공	국제해양기술	계열회사	124,377,943	123,170,549	247,548,492	0	질권설정(2021.08.26.,021.11.04)/ 질권설정해지(2022.04.29)
합계			124,377,943	123,170,549	247,548,492	0	

#### 기재상의 주의

1.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은 사업연도중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부동산, 동산 또는 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한 내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한다. 다만, 당기말(업무보고서 기준일) 현재 거래 상대방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주주등에 대한 기재 생략가능하다.

2. 당기중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별 기초 또는 기말(업무보고서 기준일) 담보제공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내역을 기재한다.
3. 구분 :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을 기재한다.
4. 담보제공잔액은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관계는 '본인'(최대주주 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와의 관계 기재)',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종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6. 담보에 대한 채권자, 담보물, 담보기간 등 담보의 조건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7. 채무보증에 대한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등 채무보증의 조건을 기재한다.

#### 다.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단위: 원)

성명 (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증권의 종류	매수	매도	누계	매매손익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증권(최대주주등이 발행한 출자지분 제외) 매수 또는 매도 내역은 사업연도중 당해 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중 증권 매수 또는 증권 매도 상대방별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이 모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주주등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계는 '본인'(최대주주 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와의 관계 기재)',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종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증권의 종류 :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채무증권,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매수 또는 매도 대상 증권의 발행인 및 당해 증권의 조건을 기재한다.

### 2.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

#### 가. 계열사 증권 인수·주선·온라인소액투자중개 현황(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MMF			파생결합 증권			기타			합계		
	전 체 (A)	계 열 사 (B)	비 중 (B/A, %)	전 체	계 열 사	비 중	전 체	계 열 사	비 중	전 체	계 열 사	비 중	전 체	계 열 사	비 중	전 체	계 열 사	비 중	전 체	계 열 사	비 중
인수	해당사항 없음																				
주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분기중 인수, 주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완료된 것을 기재한다.
2. '인수' 및 '주선'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및 제13항을 참조한다.
3. 펀드(MMF 제외)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수익증권에 기재한다.
4.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로 기재한다.

**나. 계열사 증권 인수 현황(상세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발행 회사 명 (계열 회사)	발행 일자	인수 금액	상대방별 매수금액				장내 처분 금액	미 처분 금액	계
				일반 투자 자	전문 투자 자	계열 사	비계 열사			
인수	주식			해당사항 없음						
	기타 지분증권									
	회사채									
	CP									
	전단체									
	CB									
	EB									
	BW									
	ELB									
	DLB									
	기타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 권									
	기타 증권									

기재상의 주의

1. 상대방별 매도금액은 인수 대상증권을 매수한 자를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계열사/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검증식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계열사+비계열사
3. 증권시장에서의 장내처분에 따라 상대방의 구분(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계열사/비계열사)이 불가한 경우 장내처분금액에 기입한다.
4. 미처분금액은 인수 후 분매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하고 인수인이 보유중인 잔량을 의미한다.
5. 상대방별 매도금액, 장내처분금액, 미처분금액은 모두 인수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6. 검증식 : 인수약정금액=계=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장내처분금액+미처분금액=계열사+비계열사+장내처분금액+미처분금액



다. 계열사 증권 주선 현황(상세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발행 회사명 (계열회사)	발행 일자	주선 금액	상대방별 매수금액				계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계열사	비계열 사	
주 선	주식	해당사항 없음						
	기타 지분증권							
	회사채							
	CP							
	전단채							
	CB							
	EB							
	BW							
	ELB							
	DLB							
	기타 채무증권							
	수익증권							
	MMF							
	파생결합증권							
기타 증권								

기재상의 주의

1. 상대방별 매수금액은 주선 대상증권을 매수한 자를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계열사/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검증식 : 주선금액=계=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계열사+비계열사
3. 펀드(MMF 제외)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수익증권에 기재한다.
4. 펀드의 경우 발행일자를 기입하지 않고, 펀드의 발행회사명은 계열사인 집합투자업자의 명칭을 기재(XX자산운용)한다.

다-2. 계열사 증권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현황(상세표)

구분	발행회사명 (계열회사)	발행일자	총 발행금액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	주식	해당사항 없음	
	기타 지분증권		
	회사채		
	CP		
	전단채		
	CB		

	EB	
	BW	
	ELB	
	DLB	
	기타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라.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유 형태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MMF	파생금융증권	기타	계
		주식	기타	회사채	CP	전단채	CB EB BW	ELB DLB	기타					
금분기말	고유	해당사항 없음												
	신탁													
	고객													
	일임													
	집합투자													
계	해당사항 없음													
전분기말 대비증감	고유	해당사항 없음												
	신탁													
	고객													
	일임													
	집합투자													
계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1. 고유 : 금융투자업자 고유계정으로 보유
2. 신탁 : 금융투자업자 신탁계정으로 보유
3. 고객 : 금융투자업자 고객계좌에서 보유(주식은 제외, 투자일임분 제외)
4. 일임 :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계좌에서 보유
5. 집합투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
6. 증가는 숫자를 그대로 기재하고 감소는 ( )안에 숫자를 기재한다.
7. 금액은 해당 분기말 평가금액을 기재한다.

마.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계열사별 분기말 보유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열사명	보유형태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MMF	파생결합증권	기타	계
		주식	기타	회사채	CP	전단채	CB·EB·BW	ELB·DLB					
	고유	해당사항 없음											
	신탁												
	고객												
	일임												
	집합투자												
	계												
	고유												
	신탁												
	고객												
	일임												
	집합투자												
	계												

기재상의 주의

1. 계열사별로 기재한다.
2. 총괄표 작성요령에 따른다.
3. 보유형태가 고객인 경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한다.

바.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보유형태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보유형태	구분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MMF	파생결합증권	기타	계
		주식	기타	회사채	CP	전단채	CB·EB·BW	ELB·DLB					
고유	전체(a)	해당사항 없음											
	계열사(b)												
	비중(b/a, %)												
신탁	전체(a)												
	계열사(b)												
	비중(b/a, %)												
고객	전체(a)												
	계열사(b)												
	비중(b/a, %)												
일임	전체(a)												
	계열사(b)												
	비중(b/a, %)												
집합	전체(a)												
	계열사(b)												

투자	비중(b/a, %)	
계	전체(a)	
	계열사(b)	
	비중(b/a, %)	

기재상의 주의

1. 전체는 보유형태별 해당증권의 전체 보유액으로 한다.
2.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백분율로 기재한다.

사. 계열사 증권 보유 현황(실보유자별 비중)

(단위 : 백만원)

보유형태	구분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MMF	파생결합증권	기타	계
		주식	기타	회사채	CP	전단채	CB EB BW	ELB DLB	기타					
신탁	일반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전문투자자													
	계열사													
	계													
고객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열사													
	계													
일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열사													
	계													

아. 계열사 증권의 취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결과와 리스크 관리 방안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자. 계열사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VII. 고객예탁재산의 현황 및 그 보호에 관한 사항

### 1. 고객예탁재산 및 보호

#### 가. 투자자예탁금 예치현황

(단위 : 원, %)

구 분	금액	별도예치 대상금액 (A)	증권 금융 (B)	기타 예치기관							예치 비율 (B/A)
				은행	거래소	국내 기타	해외증권 시장	해외파생 상품시장	해외 기타	소 계	
위탁자예수금											
장내 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기타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예치금액은 당기말 잔액을 기재하고, 별도예치대상금액은 당기말 예치의무 대상인 고객 예수금액을 기재한다.

#### 나. 투자자예탁증권 예탁현황

(단위 : 원)

구 분	투자자 예탁증권	예탁대상 증권금액	예탁기관			비고
			예탁결제원	기타	합계	
위탁자 증권						
저축자 증권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증권						
기타						
합계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투자자예탁증권은 당기말 잔액을 기재하고, 예탁대상증권금액은 당기말 예치의무 대상인 예탁증권을 기재한다.

#### 다. 보험료 납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금등의 연평균 잔액	보험요율	보험료	비 고
보험료				
특별기여금				

해당사항 없음

#### 기재상의 주의

1.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한 매년 6월말(연 1회)에 부보대상금융투자업자만 보고한다.
2.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부보대상예금 평균잔액을 기재하고, 보험료는 부보대상예금평균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기재한다.

## IX.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등에 관한 사항

### 1. 내부통제정책

#### 가. 내부통제체제 구축현황

내용
<p>한국교통자산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li><li>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li><li>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li><li>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 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li><li>5.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li><li>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li><li>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li><li>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li></ol> <p>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li><li>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li><li>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li>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li><li>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li>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li><li>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li></ol> <p>또한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도록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p>

#### 기재상의 주의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 부터 제2-33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기재하되, 감사의 기능과 역할, 내부감사부서 감사 방침 등도 기재한다.

## 2. 위험관리정책

### 가. 위험관리조직 및 정책

내용
<p>1. 리스크의 종류</p> <p>(1)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자금조달 및 운용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p> <p>(2) 신용위험(Credit Risk): 발행기관 또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p> <p>(3) 시장위험(Market Risk): 금리, 환율 등 투자증권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p> <p>(4) 운영위험(Operation Risk): 운용과정에서 관계법규 등을 위배하거나 고유재산 운용담당자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p> <p>2. 리스크 관리 조직 및 활동</p> <p>자산운용 관리 조직 이외에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 관리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p> <p>(1) 재산 운용상황 점검 및 통제</p> <p>(2)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관리</p> <p>(3)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p> <p>(4) 투자심의위원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의 감독</p> <p>(5) 회사의 제반 위험요소의 파악 및 관리</p> <p>3. 리스크관리 체계</p> <p>각 리스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지체없이 대응방안을 포함한 조치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p> <p>다음 각호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p> <p>(1) 운영위험,법률위험, 평판위험관리</p> <p>(2) 고유재산의 위험관리</p> <p>(3)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p>

#### 기재상의 주의

위험의 종류, 위험관리조직,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정책, 위험관리방법 등을 기재한다.

## 3.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내용

#### 기재상의 주의

- 외부감사인의 명칭,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등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파일을 첨부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7항에 따른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도 동 보고서에 첨부

## X.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중요한 소송사건

(단위 : 건, 원)

당사원고		당사피고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기준으로 기재한다.

### 2. 제재현황

제재일자	원인	제재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재상의 주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최근 5년간 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융감독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을 기재한다.



## ※ 영업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일반적 내용

### □ 영업보고서 작성의 근거법률 및 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3. 「금융투자업 규정」 제3-65조 부터 제3-70조4.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2조 부터 제2-57조

### □ 정의

1. 최대주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2. 주요주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
3. 특수관계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4. 관계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계회사
5. 자회사 :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는 경우 그 다른회사
6.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 일반원칙

1. 금융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
2.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일로부터 제출일 사이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식표시한다.
4. 영업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표,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5. 영업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영업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특히 회사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된다.